

건축물대장 발급 · 열람 구비서류

건축물현황도

『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』 제11조(건축물대장 등본·초본의 발급 및 열람) 제3항에 의거하여 발급 가능.

용인르네상스

- ▣ 방문 신청 : 신청서 작성 → 대장: 누구나 신청가능/ 도면: 구비서류 검토 → 구비서류 충족 시 발급 → 수수료 결제
- ▣ 인터넷 무료 신청 : 세움터(www.eais.go.kr) → 민원서비스 → 발급서비스 → 건축물대장(현황도) 발급 신청 → 출력

본인

- 신분증

대리인

- 소유자 위임장(도장날인), 대리인 신분증
- 직계가족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

법인

- ◆ 법인 대표자 :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, 본인 신분증
- ◆ 법인 대리인 :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, 위임장(법인인감날인), 대리인신분증

임차인

- ◆ 임차인 본인 : 임대차계약서, 본인 신분증
- ◆ 개인 대리인 : 임대차계약서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(도장날인)
- ◆ 법인 대리인 : 임대차계약서,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(법인인감날인)

※ 신청 수수료 : 대장발급(1건당) 500원, 현황도면(1건당) 100원

※ 모든 위임장은 원본 및 도장 날인된 서류를 기준으로 합니다.

※ 모든 대장 및 현황도는 본인 소유에 따라 발급의 제한 또는 내용의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